

안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830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1999. 11. 18.

발 의 자 : 김명환 의원

외 6 인

□ 제 안 이 유

- 의회사무기구의 하부 조직인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「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」이 개정공포(대통령령 16,550호, '99.9.9) 시행됨에 따라
- 현행 안산시의회사무국 직제규칙을 안산시의 관련규칙에 포함 규정함이 바람직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, 현행 조례 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코자 함.

□ 주 요 골 자

-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두며,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.(안 제2조)
-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며,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(안 제3조)
-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(안 제4조)
-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20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한다.(안 제5조)
-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(안 제6조)

□ 참 고 사 항

- 지방행정조직 운용지침(경기도정 12200-824, '99.9.15) 및 안산시 총무 12200-5742호 ('99.9.30)

□ 예산수반사항 : 없음

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 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

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
의하여 안산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사무를 처리하기
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
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
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무국의 설치)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
사무국을 둔다.

②사무국은 의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과 입법활동등에
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.

제3조(사무국장)①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.

②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
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4조(전문위원)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
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.

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.

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
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제5조(직원의 정원)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20명으로 하며
그 직급별 정원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
사무분장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1편 의회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

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
정수등에관한조례

(안산시조례 제378호)
1991. 3. 19

개정 1992. 2.29 조례 제437호
개정 1992.10.15 조례 제462호
개정 1994. 1. 5 조례 제531호
개정 1995. 3.13 조례 제610호
개정 1995.11.25 조례 제656호
개정 1996. 1.12 조례 제662호
개정 1996.12. 6 조례 제718호
전문개정 1998.10.12 조례 제804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에 의하여 안산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국직원의 정수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의회사무국은 의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의회 및 의회 의원의 조례입안 및 의정활동과 의회의 행정사무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.

제3조(사무직원) ①의회사무국에 의회사무국장과 전문위원 및 직원(이하 "사무직원"이라 한다)을 두며, 의회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②의회사무국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
제4조(사무직원의 정수)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20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안산시의회사무국 직제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안산시 의회구성일부터 시행한다.

제1편 의회 안산시의회사무국외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부 | 칙 <'92.10.15> |
|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| |
| 부 | 칙 <'94. 1. 5> |
|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| |
| 부 | 칙 <'95. 3.13> |
|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| |
| 부 | 칙 <'95.11.25> |
|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| |
| 부 | 칙 <'96. 1.12> |
|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| |
| 부 | 칙 <'96.12. 6> |
|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| |
| 부 | 칙 <'98.10.12> |
|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| |